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세지 개선방안

장 상 록

대구시청 세정담당관실 채남장리팀장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지방차지제도 도입 이후 지방재정 규모가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큼 성장하였고 그동안 정부는 시대 변화에 따라 조세제도를 끊임없이 변화 시켜왔다. 특히 지방세 제도면에서 기존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지방세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별제한법으로 3개의 법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2010년까지의 16개세목을 통폐합하여 지방세목을 11개로 간소화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하다고사료되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대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과거 개발연대에서는 경제성장 위주의 성장거점 개발이 주도해 왔고,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

에 수도권외의 과밀과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를 내세운 참여정부 기간에도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간 재정불균형은 더욱 확대 되었고, 근본적으로 세원의 편재와 수도권외의 과밀화 및 집중현상이 아직도 진행중이고, 동일한 지역이라도 광역과 기초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으므로, 현행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개선을 위하여 현행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중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과 소득세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개선하는 두가지를 연구범위로 정하였다.

II.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개요

1. 개요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특별징수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법인세액에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동시에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만 해당되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는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된다.

2.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연혁

- ' 73.4.1 법률 제259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과세하던 영업세·소득세·법인부가세가 폐지되고 주민세(균등할, 소득할, 특별징수)가 신설 되었음
- ' 76년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7.5%로 변경한 후, 95년에 교육재정 등 자치단체 재정보호를 위해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국세의 7.5%에서 10%로 변경
- ' 09.12.31 법률 제8913호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주민세소득할을 변경하여 지방소득세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입방법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해당 관할 과세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징수세액이 특별징수세액납입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과세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이자소득 및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과세권자가 납세 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그 소득의 지급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의 당첨금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해당 당첨복권의 판매지
- 연금소득중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사람의 주소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Ⅲ.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실태와 문제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중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과 소득세 사업소득중 원천징수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납세지 현황,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투토)운영 현황

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투토)의 종류 및 환급방법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투토)은 스포츠배팅의 재미와 건전한 여가문화를 제공하며 사회와 국가적으로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42조의 3)
 - ※ 2000.7.27대통령령 제16918호로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 2001.10월부터 발매개시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는 축구·농구·야구·골프·배구 및 씨름으로 하며,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는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특별식으로 구분하고, 환급방법에 따라 고정환급률식(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규정)과 고정배당률식(환급금을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으로 구분하며
- 체육진흥투표권약관 제22조(환급금의 지급)에서 판매점 등에서 발매기를 통해 발매한 투표권의 경우 100배 이하의 환급금은 판매점을 비롯한 환급금 지급대행은행(신한은행)지점에서, 100배 초과 1억원 미만의 환급금은 지급대행은행(신한은행) 지점에서, 1억원 이상 환급금은 지급대행은행(신한은행) 본점에서 환급하고 있으며
- 인터넷발매사이트의 발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한 경우 당첨금은 해당서비스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점에서 일괄 지급한다.

나. 연도별 체육진흥 투표권(스포츠투토) 매출현황

(단위:억원)

구 분	합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매출액	75,063	18,731	17,590	15,962	13,649	9,131

※ 사행산업 관련 통계자료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6월) 72p

다. 체육진흥 투표권(스포츠투토) 1억원 이상 당첨금 지급현황 (본점지급)

(단위:억원)

구 분	합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당첨금 지급액	196,686	37,635	43,585	40,652	41,166	33,648

자료 : 체육진흥관리공단 내부자료

※ 소득세는 당첨금 지급금액의 20%,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는 소득세액의 10%임

2.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 당첨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에 의하여 당첨금이 1억원 이상일 때는 지급대행은행 본점(서울시)에서 지급토록 함에 따라 당첨금 지급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소득의 발생지가 아닌 지급지(서울시)에 일괄 납부하는 모순이 있고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하여 복권의 당첨금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본점 소재지인 서울시가 납세지가 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의 발생지인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주소지(판매지)로 개정함(05.12.31개정)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포토) 1억원이상 시도별 당첨금 현황

(단위:천원)

구 분	합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57	196,686,270	99	37,634,965	122	43,585,155	56	40,652,363	99	41,165,988	81	33,647,799
강원도	10	2,056,839	4	777,367	2	280,810	1	255,593	2	351,995	1	391,074
경기도	115	41,562,882	27	7,505,682	28	6,870,436	11	7,635,220	31	12,725,677	18	6,825,867
경상남도	21	10,774,909	9	5,534,058	3	560,147	4	1,631,886	5	3,048,818	0	0
경상북도	20	6,417,503	3	1,526,094	6	1,589,074	2	1,038,392	5	1,454,420	4	809,523
광주광역시	14	5,567,746	4	1,721,707	5	2,145,697	3	1,415,346	0	0	2	284,996
대구광역시	26	10,266,969	3	871,571	9	3,737,610	3	774,255	6	2,042,078	5	2,841,455
대전광역시	18	4,844,464	6	1,306,055	4	1,362,594	1	310,460	5	885,640	2	979,715
부산광역시	20	7,989,984	0	0	7	3,606,655	4	942,964	4	842,846	5	2,597,519
서울특별시	117	67,533,601	21	8,878,193	34	14,534,475	13	17,822,635	23	12,502,730	26	13,795,568
울산광역시	11	6,093,561	4	3,175,318	2	295,639	3	2,274,782	0	0	2	347,822
인천광역시	22	10,619,952	3	541,075	5	1,997,299	4	2,773,154	4	3,842,507	6	1,465,917
전라남도	6	1,450,434	1	187,864	2	493,587	0	0	2	541,348	1	227,635
전라북도	16	5,897,765	6	2,743,561	2	1,169,186	1	258,990	5	1,174,215	2	551,813
제주도	10	6,493,611	1	255,269	2	955,586	4	3,005,787	2	554,391	1	1,722,578
충청남도	14	4,176,304	2	379,737	7	2,848,043	0	0	2	493,839	3	454,685
충청북도	17	4,939,746	5	2,231,414	4	1,138,317	2	512,899	3	705,484	3	351,632

자료 : 체육진흥관리공단 내부자료

3. 사업소득중 원천징수현황

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개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크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 봉사료수입금액, 납세조합 징수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사후적 정산절차로서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이 있다.

나. 원천징수대상 소득 및 세율

소득자 구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내국법인	이자소득, 투자신탁 수익금분배금,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소득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개 인	이자소득 ·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장기저축이자소득 · 비연금대금의 이익 · 일반 이자소득	30% 25% 14%
	배당소득	14%
	사업소득(의료보건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의 인적용역)의 수입금액	3%
	근로소득	기본세율 (매월원천징수시는 간이세율)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소득	기본세율 (매월원천징수시는 간이세율)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8%
	기타소득	20%
	봉사료 수입금액	5%
	퇴직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다.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과 대교 등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서울 본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서울에 납부함에 따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소득이 지방에서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사회에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09년 귀속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인원	지급건수	연간지급금액	소득세
합계	2,965,680	4,935,321	39,660,961	1,225,361
서울	830,246	1,525,376	12,703,833	390,508
인천	177,805	288,172	1,879,507	58,449
경기	723,56	1,199,811	8,706,094	268,264
강원	63,756	99,919	753,612	23,952
대전	92,544	144,838	1,242,655	38,249
충북	64,929	99,852	775,523	24,127
충남	85,556	126,465	1,011,140	31,594
광주	86,283	139,780	1,573,385	48,828
전북	76,115	119,781	1,224,875	37,970
전남	57,255	87,909	988,721	30,815
대구	139,845	231,383	1,989,884	61,016
경북	109,745	161,075	1,054,707	33,152
부산	217,956	345,644	2,997,605	92,543
울산	64,147	100,111	715,654	22,638
경남	144,753	210,079	1,714,290	53,037
제주	31,239	55,126	329,477	10,218

2009년 귀속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인원	지급건수	연간지급금액	소득세
합계	3,403,714	4,935,321	39,660,961	1,225,361
저술가	84,020	139,832	455,879	13,666
화가관련	16,911	23,198	186,681	5,583
작곡가	11,457	13,957	82,522	5,463
배우	19,130	37,190	330,733	9,912
모델	9,851	14,977	48,743	1,462
가수	7,415	13,139	71,321	2,135
성악가	8,716	11,670	35,717	1,071
연예보조	76,519	139,780	370,035	11,099
지문·고문	67,064	80,635	541,337	16,238
바둑기사	446	750	7,377	221
꽃꽂이교사	1,570	1,874	11,631	349
학원강사	308,219	458,726	3,492,706	104,722

직업운동가	13,510	19,618	374,903	11,245
유형접객원	139,904	232,160	1,915,150	95,623
보험설계	73,452	91,962	2,850,939	85,472
음료배달	18,049	30,795	7,866	7,866
방관·외관	322,600	487,854	2,805,400	84,043
기타자영업	489,275	678,596	3,919,087	117,589
다단계판매	901,589	955,642	657,655	19,403
기타모집수당	538,781	858,464	4,296,150	128,638
간병인	48,490	61,122	187,402	5,615

(단위:백만원)

구 분	인원	지급건수	연간지급금액	소득세
대리운전	21,305	4,935,321	60,364	1,728
행사도우미	94,010	131,312	304,766	9,141
물품배달	22,434	26,107	190,549	5,715
병의원	79,196	358,436	16,056,715	480,015
기타	29,801	32,532	144,944	4,348

4.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사업소득 연말정산 문제점

-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 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매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보험회사 본사인 서울에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등에서 환급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IV. 개선 방안

1. 체육진흥 투표권 납세지 판매지로 개편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 당첨금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개정

2.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납세지 주소지 개선

-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과 대교 등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주소지로 개정함

V. 결 론

1. 체육진흥 투표권 납세지 판매지로 개편

현행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중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에 의하여 당첨금이 1억원 이상일 때는 지급대행은행 본점(서울시)에서 지급토록 함에 따라 당첨금 지급에 따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소득의 발생지가 아닌 지급지(서울시)에 일괄 납부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체육진흥투표권 당첨금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해당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개정하고, 또한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매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보험회사 본사인 서울에 납부하고, 연말정산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등에서 환급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에 대한 사업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의 주소지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1. 김의효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회 2011
2. 김태호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11
3. 전동훈 「지방세실무해설」 영화조세통람 2011
4. 소득세실무 한국세무사회 2010
5. 송석명, 김미정 「소득세회계」 경영과미래 2010